

의안번호	제 40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 283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김화수의원외 6명
제안연월일	2009년 8월 28일

#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제안연월일 : 2009년 8월 28일  
제 안 자 : 김회수, 김법기, 한창동  
               최미애, 최광우, 최재우  
               강태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공포(2009. 4. 1.) 시행됨에 있어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5조)
    - 의장에게 겸직 신고(변경신고)는 서면으로 신고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 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 「지방자치법」 제3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신뢰를”을 “신뢰”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사무감사 또는”을 “행정사무감사,”로, “ 경우,”를 “경우”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일”을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인 · 단체 또는”을 “개인 ·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보고 또는 신고를”을 “보고하거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 경우 또는”을 ”경우와”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도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윤리강령)</b>-----<u>신뢰를</u>-----.</p> <p><b>제3조(윤리실천규범) (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u>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u>-----.</li> <li>5. -----<u>행정사무감사 또는</u>----- ---경우, -----<u>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u> <u>이익을</u>-----.</li> <li>6. (생략)</li> <li>7. -----<u>기타 개인 · 단체 또는</u>-----.</li> <li>8. 「<u>공직자윤리법</u>」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li> <li>9. -----<u>보고 또는 신고를</u>-----.</li> <li>10. -----<u>경우 또는</u>-----.</li> </ol>	<p><b>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윤리강령)</b>-----<u>신뢰</u>-----.</p> <p><b>제3조(윤리실천규범) (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u>-----.</li> <li>5. -----<u>행정사무감사,</u>----- ---경우-----<u>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u>-----.</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u>그 밖에 개인 · 단체,</u>-----.</li> <li>8. 「<u>공직자윤리법</u>」에 따라 재산등록과-----.</li> <li>9. -----<u>보고하거나 신고</u>-----.</li> <li>10. -----<u>경우와</u>-----.</li> </ol>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b>제5조(겸직신고)</b> ① 도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u>효</u> 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신 설>	<p><b>제6조(영리행위의 제한)</b> 도의원은 <u>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u> 제 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 설>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

## 관련규정

### □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범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

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 2008. 10. 31, 2008. 11. 7, 2009. 7. 10.>

###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행정소방위원회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교육사회위원회

가.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산업경제위원회**

-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건설문화위원회**

- 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참고자료

**농업법인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 규 정	○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 · 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 농업인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합자회사 : 유 · 무한 각 1인 이상 ○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 (회 이상의 사원) ○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준조합원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 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 으로 구입 · 유통 · 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 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 현금, 기타현물</li> <li>○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li> <li>○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 현금, 기타현물</li> <li>○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li> </ul>
의 결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1표제(합의제)</li> <li>※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표씩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지분에 의함</li> </ul>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li> <li>○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li> <li>○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li> <li>○ 농작업의 대행</li> <li>○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li> <li>○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li> <li>○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li> <li>○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li> <li>○ 소규모관광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li> </ul>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2조제3호</li> </ul>
타법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5조제8항)</li> <li>○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li> </ul>
설립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생산자단체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협연초 생산협동조합 (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법 제16조 제3항)</li> </ul>
구성원의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li> <li>○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li> <li>○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li> <li>○ 주식회사 : 주주</li> </ul>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b><u>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u></b>	<b><u>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u></b>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00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윤리강령)</b>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li> <li>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li> <li>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li> <li>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지방의회의원</u>(이하 “지방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윤리강령) (현행과 같음)</b></p>

현 행	개정안
<p>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p> <p>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p> <p><b>제3조(윤리실천규범)</b> 지방의원은 제2 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p> <p>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b>제3조(윤리실천규범)</b>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4조(윤리심사 등)</b> 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b>제4조(윤리심사 등) (현행과 같음)</b></p> <p><b>제5조(겸직신고)</b> 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6조(영리행위의 제한)</b> 지방의원은 「000의회 위원회조례」(예시) 제0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p> <p>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한다.</p>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00시 · 도지방의회의원

(인)

00시 · 도지방의회의장 귀하